



‘세계 최고의 글로벌 해기사를 양성하는’ 해양마이스터고

2022학년도

부산해사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2021. 7.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BUSAN NATIONAL MARITIME HIGH SCHOOL

2022학년도 부산해사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 본교에 지원한 학생은 전국의 다른 마이스터고에 지원할 수 없음(전국 마이스터고 이중지원 불가)
- 본교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고 및 후기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함
- 본교에 최종 합격한 자(포기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후기 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없음
- 학교 소재지 내 감염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전형일 및 전형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실기 등 운영 시 안전관리계획, 취소 시 대체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함

I 모집 인원

1. 모집 단위 : 전국단위
2. 모집 대상 : 남학생 116명, 여학생 12명
3. 모집 학과 및 정원

가. 학과별 모집 정원

구분	항해과	기관과
학급수	4학급	4학급
정원	남 58명, 여 6명	남 58명, 여 6명

나. 전형 유형별 모집 정원

(단위: 명)

학과	모집정원	특별전형		일반전형	정원 외	
		사회통합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특례 입학 대상자
항해과	64(6)	7(1)	2(1)	55(4)	1	1
기관과	64(6)	7(1)	2(1)	55(4)		
계	128(12)	14(2)	4(2)	110(8)	1	1

※ 확인사항

- ① ()안은 여학생 모집 인원 수를 의미함
- ② 정원 외 전형 중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와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은 남·여학생 구분 없이 선발함
- ③ 학과별로 선발하며, 2지망을 선택한 학생은 2지망으로 선발될 수도 있음
- ④ 특별전형 불합격자는 자동으로 일반전형에 응시하게 되므로 본교의 특별전형에 지원 후 전국의 다른 모든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일반전형에 이중지원 불가(특별전형 인원 미달 시 일반전형 지원자로 충원함)
- ⑤ 정원 외 선발 전형 중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4호」에 의거 학과별 모집정원의 3%(1명) 범위 내에서 선발
- ⑥ 정원 외 선발 전형 중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 2, 3, 4호」에 의거 학과별 모집정원의 2%(1명) 범위 내에서 선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일괄 심사 후 특례입학전형 지원 자격 부여] [부산외 타시도 지역은 본교에서 자격 확인]

II 지원 자격

구 분	지원 자격	
일반 전형	2005. 1. 1. 이후 출생자(선박직원법 제6조 해기사 결격사유에 의거)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특별 전형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며,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사회 통합 전형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③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사회 다양성 전형	① 소년·소녀가장 ② 다문화가정자녀 (지원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③ 다자녀가정자녀(미혼의 자녀가 셋 이상 가정의 자녀) ④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또는 자녀
학교장 추천 전형	① 중학교 재학 중에 2개 학기 이상 학급 반장 또는 학생회회장, 학생회부회장으로 활동한 자 ② 기준일 직전 15년 내 1년 이상 승선한 선원 자녀(기준일 : 2021. 9. 30.)	
정원 외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 또는 ‘정원 외’전형 모두 지원 자격이 있으나, 두 전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특례 입학 대상자	1. 부산광역시교육청 특례 입학 대상자 심사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 2, 3, 4호에 해당하는 자 * 상세 내용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특례 입학 업무 처리 안내(부산시교육청 고입포털 사이트 자료실 참조)’에 따라 전형 실시 ①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③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④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⑥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⑦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인 학교의 장이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을 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Ⅲ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 교부 및 접수	2021. 10. 18.(월) 9:00 ~ 10. 21.(목)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서 작성 및 접수 ○ 원서 및 제출서류는 스캔 후 인터넷 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원본대조필)
1단계 합격자 발표	2021. 10. 25.(월)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조회 (10월 25일 12:00까지 이중 지원자 통보 예정)
1단계 합격자 건강진단서 제출	2021. 10. 25.(월) 15:00 ~ 10. 29.(금)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발급
2단계 전형 (마이스터 심층소양 검사, 심층면접)	2021. 10. 29.(금) 9: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에서 실시 (당일 불참 시 불합격 처리)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1. 3.(수)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조회
입학 등록 (예비 소집일)	2022. 1.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등록 제반 서류 작성 및 예비 학교(O.T) 안내, 교복 치수 측정 등 실시함

※ 미 등록 시 합격이 취소되며,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이후 모든 고등학교의 어떤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음. 또한, 2022학년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음

IV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1. 제출 방법

유의사항	제출 기한
1.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함 - http://www.maritime.hs.kr 2. 별도의 우편 제출은 하지 않음	2021. 10. 21.(목) 17:00까지 입력 완료된 서류에 한함

2.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공통 필수]

연번	서류 목록	비고
1	입학원서 1부 - 본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후 인쇄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지원자, 보호자, 출신 중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스캔하여 파일 첨부	소속 중학교
2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 - 교과목별 성취기준/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포함하여 출력 -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접수번호 기재 후 제출 -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날인 - 스캔하여 파일 첨부	소속 중학교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중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해당자
4	※ 1단계 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 서류 ● 선원 건강검진 진단서 1부 -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건강검진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선원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발급) - 제출일: 2021. 10. 25.(월) 15:00 ~ 10. 29.(금) 17:00 - 선원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 선원건강검진은 일반/특수 2종류 중 일반용으로 검진	1단계 전형 합격자 필수

나. 특별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 [해당자 선택]

구분	서류 목록	비고	
사회 통합 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구청,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가보훈대상자’ 란에 체크 표시 (본교에서 직접 대상자 확인)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다문화 가정 자녀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또는 귀화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다자녀 가정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2. 각 자녀 개인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구청,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학교장 추천 전형	2학기 이상 반장, 학생회장·부회장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확인 또는 임명장 사본	
	선원 자녀	1. 승선(승무)경력증명서 1부 (각 지방해양수산청 발행)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정원 외 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 [해당자 선택]

구분	서류 목록	비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 가보훈대상자’란에 체크 표시(본교에서 직접 확인)	
특례 입학 전형 대상자	1. 부산광역시교육청 특례 입학 대상자 심사에서 대상자 로 선정된 자는 제출 서류 없음 2. 부산광역시교육청 특례 입학 대상자 심사를 완료하 지 않은 자의 경우 [붙임1] 참조하여 서류 제출	[붙임1] 참조

V

전형 방법

1. 선발 방법

- 학과별 선발(2지망을 선택한 학생은 2지망으로 선발될 수 있음)
- 1단계 서류전형(교과 성적, 출결 성적, 봉사활동 성적 합산)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구분		항해과						기관과					
모집 정원	명	일반전형 (55명)		특별전형(9명)				일반전형 (55명)		특별전형(9명)			
				사회통합전형 (7명)		학교장추천전형 (2명)				사회통합전형 (7명)		학교장추천전형 (2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1명	4명	6명	1명	1명	1명	51명	4명	6명	1명
선발	%	64	6	9	2	2	2	64	6	9	2	2	2
		125	150	150	200	200	200	125	150	150	200	200	200

-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마이스터 심층소양 검사, 심층면접을 실시함
- 1단계 서류전형 성적에 2단계 전형(마이스터 심층소양 검사 성적, 심층면접 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 제출된 선원 건강진단서의 결과는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신체 검사에서 배제 조건에 해당되면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붙임2] 참조)
- 1단계 서류 전형 및 2단계 전형에서 탈락된 특별전형 지원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전형을 실시하며, 이 경우 일반전형의 배점 및 반영 비율로 환산됨
- 정원 외 지원자는 특별전형 지원자와 같은 기준으로 전형하며 지원자 전원에게 2단계 전형 자격 부여함

2. 정원 내 전형 방법

가. 배점 및 반영 비율(%)

전형 구분	교과 성적			출결 성적	봉사활동 성적	마이스터 심층소양 검사성적	심층면접 성적	총점
	2-1	2-2	3-1					
일반전형	50	50	50	30 (10%)	30 (10%)	30 (10%)	60 (20%)	300 (100%)
	150(50%)							
특별전형	30	30	30	45 (15%)	30 (10%)	60 (20%)	75 (25%)	300 (100%)
	90(30%)							

나. 반영 과목

- 1) 성취수준이 A, B, C, D, E(5단계)로 평가되는 전 교과목
- 2) 영어, 기술·가정 과목은 가중치 50%를 반영함

다. 교과 성적 산출 방법

- 1) 각 학기별로 이수한 전 교과목 중 성취 수준이 A, B, C, D, E로 평가되는 과목의 성취수준 평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학기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배점으로 환산함

성취율(원점수)	성취수준 정보	
	성취수준	성취수준에 따른 점수 (괄호 안은 영어, 기술·가정 교과목의 가중치 50% 반영)
90% 이상	A	5 (또는 7.5)
80% 이상 - 90% 미만	B	4 (또는 6.0)
70% 이상 - 80% 미만	C	3 (또는 4.5)
60% 이상 - 70% 미만	D	2 (또는 3.0)
60% 미만	E	1 (또는 1.5)

성취수준 평균 = $\frac{\text{해당 학기에 이수한 전 교과목 중 성취수준이 A, B, C, D, E로 평가되는 교과목의 과목별 성취수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영어, 기술·가정 제외)}}{\text{해당 학기에 이수한 전 교과목 중 성취수준이 A, B, C, D, E로 평가되는 교과목(영어, 기술·가정 제외)의 개수} \times 5}$ + $\frac{\text{해당 학기에 이수한 전 교과목 중 성취수준이 A, B, C, D, E로 평가되는 영어, 기술·가정 과목별 성취수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text{해당 학기에 이수한 전 교과목 중 성취수준이 A, B, C, D, E로 평가되는 영어, 기술·가정 교과목의 개수} \times 7.5}$

※ 각 학기별 성취수준 평균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산출함

예시) 해당 학기 이수 교과목의 성취수준이 다음 표와 같으면 성취수준 평균은 0.9가 된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한문
성취 수준	A	B	A	B	A	B	A	B
성취 수준에 따른 점수	5	4	5	4	5	6.0	7.5	4

$$\begin{aligned} \text{성취수준 평균} &= \frac{5(\text{국어}) + 4(\text{도덕}) + 5(\text{사회}) + 4(\text{수학}) + 5(\text{과학}) + 4(\text{한문})}{6(\text{과목수}) \times 5} + \frac{6.0(\text{기술·가정}) + 7.5(\text{영어})}{2(\text{과목수}) \times 7.5} \\ &= \frac{27 + 13.5}{30 + 15} = \frac{40.5}{45} = 0.9 \end{aligned}$$

2) 각 학기별 교과 성적 산출식

◦ 일반전형(50%)	◦ 특별전형(30%)
2-1 성적= 50점 × 성취수준 평균(2-1)	2-1 성적= 30점 × 성취수준 평균(2-1)
2-2 성적= 50점 × 성취수준 평균(2-2)	2-2 성적= 30점 × 성취수준 평균(2-2)
3-1 성적= 50점 × 성취수준 평균(3-1)	3-1 성적= 30점 × 성취수준 평균(3-1)

- 3) 성취도가 없는 졸업생의 성적 산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해당 과목의 ‘수’는 성취도 A, ‘우’는 성취도 B, ‘미’는 성취도 C, ‘양’은 성취도 D, ‘가’는 성취도 E를 적용한 후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 4) 조기진급, 재취학, 해외귀국, 조기졸업(예정), 자유학기제 등으로 특정 학기나 특정 학년의 성적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과목 성적을 우선 반영한다.

(전체)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나 학년	대체 학기
2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을 반영
2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을 반영
2학년 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반영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을 반영

- 위에 제시된 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반영 방법을 심의 결정한다.
- 특정학기의 전체 성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개별 교과목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라. 출결 성적 산출 방법

- 1) 졸업예정자는 입학 후부터 출결 기준일(2021. 9. 30.)까지의 출결 현황을 평가하며, 졸업생은 입학 후부터 졸업일까지의 출결 현황을 평가함
- 2)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출결 성적 산출식
 - 일반전형 = 30점 - {(미인정 결석 일수×1.5점) + (미인정 지각 횟수 + 미인정 조퇴 횟수 + 미인정 결과 횟수)×0.5점}

예시)

출결 내용	0	미인정 지각 1회	...	미인정 결석 1일	미인정 결석 1일, 미인정 지각 1회	...	미인정 결석 2일	...
출결 성적	30점(만점)	29.5점	...	28.5점	28점	...	27점	...

- 특별전형 = 45점 - {(미인정 결석 일수×3점) + (미인정 지각 횟수 + 미인정 조퇴 횟수 + 미인정 결과 횟수)×1점}

예시)

출결 내용	0	미인정 지각 1회	...	미인정 결석 1일	미인정 결석 1일, 미인정 지각 1회	...	미인정 결석 2일	...
출결 성적	45점(만점)	44점	...	42점	41점	...	39점	...

마.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 1) 중학교 입학 후부터 봉사활동 성적 산출 기준일까지의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함
- 2) 봉사활동 성적 산출 기준일은 재학생은 2021. 10. 17.(일)까지, 졸업생은 졸업일까지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만 인정함
- 3) 봉사활동 성적 = 30 - {(30 - 봉사 활동 시수) × 0.5}
- 4) 기준일까지의 봉사활동 총 시간에 대한 성적 예시

봉사활동 총시간	30시간	...	25시간	...	20시간	...	15시간	...	10시간	...
봉사활동 성적	30점(만점)	...	27.5점	...	25점	...	22.5점	...	20점	...

※ 감염병 휴업 고려 (2022, 2023학년도 전형에 한시적 반영)

바. 마이스터 심층소양 검사 성적 산출 방법(외부 전문기관 의뢰)

- 1) 해양 분야 영 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반영함
- 2) 영역별 배점
 - 일반전형: 30점(10%)
 - 특별전형: 60점(20%)

사. 심층면접 성적 산출 방법

- 1) 심층면접은 구술 면접과 전공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영역별로 면접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2) 영역별 배점
 - 일반전형: 30점(10%, 구술 면접) + 30점(10%, 전공 수행 능력) = 60점(20%)
 - 특별전형: 60점(10%, 구술 면접) + 45점(15%, 전공 수행 능력) = 75점(25%)
- 3) 구술 면접 영역에서는 인성이나 미래 설계 계획 등을 평가하며, 전공 수행 능력 영역에서는 해기사로서의 자질과 진로 적성 및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4) 심층면접에 관한 추가 안내는 1차 합격자 발표 시에 홈페이지 공지함

3. 정원 외 전형 방법

가. 지원 자격 및 범위

- 1)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당자, 독립유공자 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특례입학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제3호 해당자)
- 2) 특례입학대상자는 학과별 모집정원의 2%(1명)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로 선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일괄 심사 후 특례입학전형 지원 자격 부여된 자에 한함] [부산 외 타시도 지역은 본교에서 별도 자격 여부 확인]

- 3)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학과별 모집정원의 3%(1명)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며 독립유공자는 손자녀(孫子女)까지, 국가유공자는 자녀(子女)까지 지원 가능함

나. 전형 방법

- 1) 배점 및 반영 비율, 성적 산출 방법 등은 특별전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 2) 지원자 수에 관계없이 전원에게 2차 전형 자격을 부여하며, 정원 외 전형에서 불합격한 자는 일반전형으로 지원됨
- 3) 마이스터 심층소양 검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지원자 중 성적 일부가 없는 자의 성적 산출

- 1)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정원 내 전형의 일부 학기가 누락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
- 2) 위에 제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반영 방법을 결정함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성적 산출 방법

가. 성적 산출 방법

- 일반전형 = $\{600 \times \frac{(5\text{개 교과 취득 점수 합})}{(검정고시 5개 교과 만점)} - 360\} \times 0.5$
- 특별전형 = $\{525 \times \frac{(5\text{개 교과 취득 점수 합})}{(검정고시 5개 교과 만점)} - 315\} \times 0.4$
- 5개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말함

나.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성적은 교과 성적과 출결 성적, 봉사활동 성적을 합한 성적으로 함

5. 합격 배제 조건

- 가. 선원 신체 검사 지정 병원의 검사 결과 승선 부적합 판정자
 -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름 ([붙임2] 참조)
- 나. 입학전형위원회가 본교에서 수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심층면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다. 면접 및 신체검사 불참자와 미등록자
- 라.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자

6. 동점자 처리 기준

- 가. 심층면접 성적이 높은 자(구술 면접, 전공 수행 능력 순)
- 나. 마이스터 심층소양 검사(적성 및 인성 검사, 외부 전문기관 의뢰) 성적이 높은 자
- 다. 출결 성적이 높은 자
- 라. 교과 성적이 높은 자(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순)
- 마. 봉사활동 성적이 높은 자
- 바. 해운 및 해운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

※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 전형일 및 전형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시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해당 중학교에 안내함

※ 면접·실기 등 운영 시 안전관리계획, 취소 시 대체 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함

VI 지원자 안내 사항

1. 선원건강검진(신체검사)

- 대상: 1차 전형 합격자
- 건강검진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공지 참조)
- 건강진단서(일반용) 제출기간: 2021. 10. 25.(월) ~ 10. 2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합격기준: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원건강검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건강검진 결과는 합격, 불합격 판정 자료로만 활용
- 건강진단서가 제출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2.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최종 합격자로 공고되고 난 이후에는 본교에 입학 등록 및 신입생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경우는 2022학년도에는 다른 어떤 학교에도 진학이 불가함
- 나.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음
- 다. 본 요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 1) 본교 입학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보호자 정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교정보	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중학교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담임교사 성명
기타	자기소개서, 추가 연락처 등

- 2)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교(교육청·교육부 포함)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및 본교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입학 전형료 : 없음

4. 본교의 특전

-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기숙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 국비로 100% 지원
- 졸업 후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에 편입 시 해기사로 3년간 승선 근무하면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됨
- 연간 총 1.5억원(2020학년도 기준) 정도의 산학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지원
- 4급 항해사·기관사 면허 취득 후 해운 선사(상선)에 해기사로 취업 가능
- 3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 근무 시 고액 초임 연봉 가능
- 본교 졸업 후 해군 부사관 지원 시 해사고 졸업생 특별 가산점 부여 혜택
- 선취업·후진학 제도 지원 가능



국립 부산해사고등학교

세계 최고의 해기사를 육성하는 해양분야 마이스터고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교무실 ☎ (051) 410-2030, 2064

행정실 ☎ (051) 410-2000, 2011

http : // www.maritime.hs.kr

FAX (051) 410-2040

[붙임1]

특례 입학 대상자 구비서류 목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비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가목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재학한 학생	나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학생 부모 모두 외국인 / 부모 1인 이상 내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 학교 전(全) 학년 성적증명 및 재학(졸업)증명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된 외국학교는 학력인정학교로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생략 가능(탑재된 자료 인쇄하여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미 탑재 외국학교는 민원인이 해당 외국 학교에서 성적 및 재학 증명 발급 후 영사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정서 제출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정원의관리(면제,유예, 졸업)증명서		(○)	(○)				○ 최종재학 년, 월, 일 및 최종재학 학년 명시 ○ 가까운 초·중·고교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가, 나목 해당자는 부, 모, 학생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		○ 순수외국인은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증 서류 제출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발급
주민등록등본	○	○	○			○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일부 가족 미등재일 경우 추가 서류)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발급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외국거주기간 확인서		○ (부,모,학생)					○ 외국 체류기간 명시 ○ 체류국 재외공관장,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발급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 부처 (교육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제3국 수학인정서		(○)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 발급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 (부,모,학생)	○ (학생)		○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인정증명서	(○)					(○)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 (발행처 안내)

[붙임2]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4. 15.>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 (제53조제4항 관련)

가. 일반건강진단의 합격판정 기준

검사항목		판정 기준
(1) 시력	갑판부 선박직원 및 당직부원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기관부 선박직원 및 당직부원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통신사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4 이상일 것.
(2) 체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3)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4) 청력	선장 및 갑판부 선원에 있어서는 두 귀 모두, 그 밖의 해원에 있어서는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색각	선장, 기관사, 통신사,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는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6)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8) 혈당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9) 간장		
- SGOT	50 IU/L 이하일 것	
- SGPT	45 IU/L이하일 것	
※ 비고		
(1)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나. 특수건강진단의 합격판정기준

검 사 항 목	정 상 기 준 치	판 정 기 준
1. CBC(빈혈)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RBC	4.2~6.3	
- H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 Hct	36.0~52.0	
- MCV	79.0~96.0	
- MCH	26.0~33.0	
- MCHC	32.0~37.0	
- WBC	4.0~10.0	
2. RPR (VDRL) (매독검사)		
3. 소변검사		